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5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 박정하·임오경·민형배

김윤덕 • 조계원 • 양문석

이기헌 · 이종욱 · 서범수

박수민 · 진종오 · 조은희

박수현 · 김승수 · 강대식

김재섭 · 정연욱 의원

(1791)

제안이유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 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 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숏폼 및 버츄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 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 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창작 및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및 기술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온라 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및 초단편영상콘텐츠를 전담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이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라 함)가 참여하는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16조).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사업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이란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용자와의 심도있는 상호작용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는 접근성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콘텐츠로서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콘텐츠(이하 "뉴미디어영상콘텐츠"라 한다) 또는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2.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란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영상채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콘텐츠로서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보도 분야의 영상콘텐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초단편영상콘텐츠"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재생시간이 매우 짧은 영상콘텐츠로 분할하여 각각의 영상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가를 받고 시청에 제공될 수 있게 하되, 이 분할된 영상콘텐츠를 연속하여 재생하면 하나의 온라인비디오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 4. "문화기술융합영상콘텐츠"란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매체환경에 특화된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영상콘텐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 가. 인공지능 및 모션캡쳐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의 인간형 피사체(실연자의 연기·구연 등을 통해 마련된 데이터를 기초 로 하여 구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현된 영상콘텐츠
 - 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내용을 특정 이용자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콘텐츠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기술융합영상콘텐츠

- 5.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창작 및 제작에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거나, 그 창작 및 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채널콘텐츠실연자 등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6. "온라인영상채널"이란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또는 이용자가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유통 서비스의 단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말한다.
 - 가. 채널의 명칭
 - 나. 채널 운영 사업자 또는 계정
 - 다.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주요 기획창작업자 또는 실연자
- 7.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란 온라인영상채널의 이용 및 공급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채널콘텐츠실연자"란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의 창작에 실연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 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뉴미디 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와 채널콘텐츠실연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에 관한사항
- 4.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관련 행사의 활성화, 국내외 협력 및 교류
- 5.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6.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창작 ·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8.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9.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10.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관련 통계 조사 ·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 기반 구축

제8조(창작 및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와 채널콘텐츠실연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창업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중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기획창작업자 및 채널콘텐츠실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기획창작업자 및 채널콘텐츠실연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영상콘텐츠 현 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 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화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뉴미디어영상콘텐츠 기술역량강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술융합콘텐츠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 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자자율협의체 등) ①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및 초단편영상콘텐츠를 전담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이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라 한다)가 참여하는 사업자자율협의체(이하 "자율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협의체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 특성에 따른 부문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자율협의체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창작자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협의 체의 활동과 자율규약 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뉴미디

어영상콘텐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뉴미디어영상 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와 채널콘텐츠실연자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우선하여 활용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자율협의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